

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2. 5. 8
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2. 4. 28

· 회부일자 : 1992. 4. 29

다. 상정일자 : 제 78회 임시회

· 제 2차 산업위원회 (1992. 5. 7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민교육원장 신 현 수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사회교육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에서 도민전체를 대상으로한 사회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교육의 기능이 변천되었으며,
-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농업의 "농"자를 기피하고 있어 각급 농대 및 농고의 명칭을 개명하는 실정이며,
- '91년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농민교육원 교육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동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으로 전환을 요구한바도 있으며,
- 농업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주민의식의 변화등으로 전 도민의 사회교육기관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추어 "농민교육원"을 "도민교육원"으로 하고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명

"농민교육원"을 "도민교육원"으로 변경

○ 제1조 (설치)

"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교육원을 둔다"를

"도민의 정신교육 과학적 영농기술교육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을 둔다"로 변경,

○ 제3조 (업무)

- 새마을 교육 → 도민일반 교육
- 농기계 훈련 → 농기계 교육
- 교육용 각종 실습장 운영 → 기능 훈련교육
- 기타 농촌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교육 → 기타 시책상 필요한 교육으로 변경

○ 제4조 (원장)

- 제2항중

"다만 제3조 제3호 내지 제5조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"를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허 회)

- 농민교육위주에서 도민전체를 대상으로한 사회교육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농민 교육의 기능이 변천되어가고 있을뿐 아니라
- '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농민교육원 교육은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공동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요구한바도 있어
- 농민교육원 조례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음 "

5. 토론요지 : 별첨 수정안의 내용과 같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개 정 안	수 정 안
제 3조 (업무) 1. 2. 영농기술 교육 3. 4. 5.	제 3조 (업무) 1. 2. 과학영농기술 교육 3. 4. 5.
제 4조 (원장) ① ② 원장은 감독한다 (이하삭제)	제 4조 (원장) ① ② 원장은 감독한다. 다만, 제3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촌 진흥원장과 협의한다

7. 심사결과

○ 개정안에 의한 수정동의안 만장일치 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